

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반사항 안내 교육자료

개인정보보호법

제 2조(정의)

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개인정보"란 살아있는 대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 - 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 - 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,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- 다. 가목 또는 나목을 제 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,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"가명정보"라 한다)

개인정보 보호 수칙

- ① 비밀번호는 유추가 어렵도록 복잡하게 만들기
- ② 웹사이트 계정 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 사용하기
- ③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기
- ④ 다른 사람과 계정정보 공유하지 않기
- ⑤ 스마트폰, SNS, 클라우드 등 2단계 인증 설정하기
- ⑥ 개인정보 동의 시 동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기
- ⑦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벤트 등 의심하기
- ⑧ 모르는 번호의 문자 링크(url) 클릭 및 앱 설치하지 않기
- ⑨ 게시글, 댓글, 사진 등 업로드 시 개인정보 확인하기
- ⑩ 택배송장, 신용카드 영수증은 반드시 찢어서 버리기

[핵심 위반사항 안내]

영리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

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자



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

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는데도 이용을 중지, 회수, 파기하지 않은 자



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